

행정처분서

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11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

업체명	대표자명	소재지	법적근거	처분 내용
지바이오	이*환	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13-54번지, 1층	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위반 :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 [별표5] 행정처분기준 2.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	경고, 1차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귀 사는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하나,
- 해당 실험동물사업자는 2016년 3월 8일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로,
 - 지도·감독을 통해 관련사항의 확인 차 점검 알림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(4.14)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,
 -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상 등록된 소재지를 방문(4.29)하였으나, 건물의 문이 잠겨있어 점검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있음

3.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